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3470호

나. 제 안 자 : 김길영 의원 외 24명

다. 제 안 일 : 2026년 2월 9일

라. 회 부 일 : 2025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시민 선정 및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에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후보자와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시의회(의장)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또한,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시의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 중 후보자 추천의 주체를 “공공단체”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추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공공단체”로 개정함 (안 제3조)

나.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 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토록 함 (안 제4조제3항)

다.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 대상자를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잘못 표기된 단어를 수정함 (안 제8조제4항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이 명예시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4조) 심사위원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려는(안 제8조)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공공단체**----------.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② (생략) <신 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하나**----------.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 검토”

1) 시의회 의장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근거 마련 (안 제3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는 시의회의장이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시민 선정 과정에 대한 시의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공공단체**---------- ---------- ----------.

○ 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7호[2]는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의회가 보다 다양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서울시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국제교류·협력 활동 증진과 관련된 역할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의2[3]에서는 이미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 추천권자에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과정에 지방의회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는 실정임

2) 시의회 동의 요청 시 심사 결과 제출 근거 마련 (안 제4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시의회에 함께 제출토록 하여 수여대상자 결정 절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② (생략) <신 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의2(후보자 추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구청장·군수, 유관 기관·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시 현행 조례 제4조제2항[4]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의회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실질적 심사가 어려워 동의 절차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25.9월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5]에서 시의회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심의 지원과 자료 제공 기준 등을 조례나 규칙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수여대상자 결정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절차를 담보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임

3) 심사위원에 시의회 추천인 포함 규정 신설 및 자구수정 (안 제8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자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에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하나**----------

4)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5)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25.9.2. (의안번호 제3109호)

또는 위촉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 제8조제4항[6]은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및 서울시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심사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4항의 “하나”는 현행 조례 중 “하나1”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오탈자를 바로 잡아 문장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6)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그 밖에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절차 전반에 대해 시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서울시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국제교류 협력 활동 증진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는 시의회의장이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의회가 보다 다양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 확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토록 명시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자 결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심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자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